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김 경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I. 들어가며

II. 『瀨尾編・科場』의 양상

III. 『瀨尾編・科場』에서 드러난 事實性

1. 정치적 부정행위와 응시자의 대응방식
2.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弊習 및 관리 대응
3. 관리강화에 따른 운영 정비의 일단

IV. 『瀨尾編・科場』의 의의와 한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R1923541), 2020년 동양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문 요약>

이 글의 목적은 李運永의 저작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事實性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當代 제도 및 법령 등과의 비교를 통해 『영미편・과장』을 특징을 살펴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즉 정치적 부정행위와 응시자의 대응 방식,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弊習, 관리강화에 따른 운영 정비로 나누어 논의를 개진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영미편』의 주된 특징은 응시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이르는 다양한 시선을 통해 시험의 과정, 배경 등 구체적인 실상을 곡진하게 담아낸 점이다. 이는 시험 경험자로서의 경험적 진술과 친인척의 간접적 진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老論系 입장에서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기에 사실의 재현이라 하지만 재현과정에서 주관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즉 『영미편・과장』은 같은 시간대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상충된 입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李運永, 瀨尾編, 필기・야담, 科擧, 事實性.

I. 들어가며

이 글은 李運永(1722~1794)의 저작인 『瀨尾編』에 수록된 「科場」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는 『영미편・과장』의 특징을 事實性和 諧謔性에 있다고 본다. 여느 필기・야담에도 허구와 사실, 환상과 현실이 공존하지만, 『영미편』은 이 양자의 특징이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본론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의 예각화 및 과정의 상세화를 위해 사실성과 해학성은 지면을 달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사실성에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科試는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 그 시행의 全國性和 頻煩性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은 절대적이었다.¹⁾ 그러기에 조선시대 과거에 대한 자료들은 넘쳐날 만큼 풍부하다. 아울러 공적 기록물이나 사적 기록물 등의 기록 주제들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중복되거나 소략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경우, 과거의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면서도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과거시험의 준비와 응시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그 이해도는 분명 높지 않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과거시험에 관한 연구는 사학계 주도로 제도사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한문학계에서도 試券과 科文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²⁾ 아울러 과

1) 黃渭周,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과제」, 『大東漢文學』22, 大東漢文學會, 2005, 485면.

2) 과거에 관한 연구는 황위주(「과거시험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과거문화의 새로운 조명』(1), 제 10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13, 11~34쪽.)의 논의에서 일별하였다. 2013년 이후로 과문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재경(『조선 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거와 관련된 이야기에도 주목하였는데, 설화에서 과거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³⁾ 반면, 필기·야담에 수록된 科擧談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미비하다. 주된 이유는 조선시대 필기·야담에서 과거시험은 대부분 당대 풍경에서 배경으로 언급되기에, 과거제도나 과거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필기·야담에서 과거는 주로 서사의 개연성을 마련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그나마 시험의 부정행위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이를 당대 사회가 요청했던 목소리로 파악하여 과거담의 현실성이나 역사성을 부각하기도 하였다.⁴⁾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영미편』은 필기·야담집으로⁵⁾ 여러 편이 공통 소재에 따라 몇 개의 ‘場’으로 묶여 있고 上冊과 下冊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과장」은 「酒場」, 「棋場」과 함께 상책에 속하는데, 작품 수는 34편이다.⁶⁾ 「과장」에는 과거제도부터 과거문화에 이르기까지

2013)과 이상옥(『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의 연구 등을 시작으로 하여 책문, 시권, 시제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 3) ‘과거설화’라는 큰 틀 안에서 과거담을 유형 분류하는 방식과 그 서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범수, 「과거설화 연구-특과제형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손지봉, 「한·중 과거설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강조연, 「과거설화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소영, 「과거설화의 유형과 의미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3; 김순재, 「설화에 나타난 과거길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한국언어문학』96, 한국언어문학회, 2016.

- 4) 이병직, 「『樸素村話』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64, 2013;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대동한문학』38, 대동한문학회, 2013.

- 5) 필기는 사대부 문인이 자유롭게 기록한 양식이기에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한문학의 정통 양식에서 벗어난 雜錄類의 범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諧謔性과 이를 구현하는 서사 구조, 표현 등이 『영미편』의 주요 특징이기에 필기라 한정하지 않았고 필기·야담이라 병칭하였다. 물론 야담은 해학성뿐만 아니라 역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조선후기에는 사실적인 배경에 허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널리 향유되었다.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특히 이전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화들이 대부분이고, 등장인물 또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이들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이운영이 직접 경험했던 科試 및 벼과 친인척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수에 이르기에 독창성이 도드라지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독창성이 질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17~18세기 과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기에 유용한 자료라 하겠다.⁷⁾

『영미편』의 이야기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개인의 경험이나 다수에 의해 가공된 것일 수도 있으며, 꾸며낸 것일 수도 있다. 정확히 이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하며, 아울러 허구적 요소라 하여 간과하기보다는 비판이나 풍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당대 문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⁸⁾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기·야담의 기본 속성과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유념하여 『영미편』의 「과장」을 사실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미편』

6) 『瀨尾編』의 소장처는 일본 경도대 가와이문고이다.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kostma.korea.ac.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운영과 생애 및 『영미편』에 대해서는 신현웅(「육국재 『瀨尾編』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에 의해 소개되었다. 다만, 「과장」의 작품 수를 32편이라 하였다.

7) 근래에는 일기 등 사적 기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응시자 입장에서 과거에 주목하였다. 전경목,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정순후, 『이제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38, 대동한문학회, 2013; 차미희,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53, 고려사학회, 2013.

8) 야담의 경우 80년대까지 현실성과 역사성에 주목하였고, 90년대 이후 야담의 보편적 속성에 주목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비현실성이나 환상성에 주목하였다. 최근에는 양 극단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쪽으로의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흐름이 진행 중이다. 이강옥,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22면.

科擧談의 소재 연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작품양상을 확인하고, 당대 과거제도 및 법령 등과의 비교를 통해 「과장」의 사실성을 확인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기타 필기·야담집에 수록된 과거담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와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II. 『瀨尾編·科場』의 양상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영미편·과장』은 숙종~영조 대의 科試와 관련한 사건 및 일화들이 전술자 및 당사자 등 여러 입장에서 다양한 시선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또한, 이전 문헌이나 필기·야담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았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 및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과장」의 내용 및 관련 제반 사항

연번	제목	등장 인물	분류	시험 정보	비고
1	노인의 博覽으로 인해 급제한 소년	玄光宇	응시자	會試	諧謔性
2	외할아버지인 朴泰尙의 안목	朴泰尙	친인척	增廣 初試	事實性
3	족조인 朴師厚의 안목	朴師厚	친인척		事實性
4	義의 程式에 대해 듣고 급제한 趙文命	趙文命	응시자	增廣 生員試	事實性
5	여주 목사 吉夢에 의해 급제한 座首	무명씨	응시자	春塘試	諧謔性
6	최후의 시권을 위한 두 유생의 다툼	무명씨	응시자	春塘試	諧謔性
7	변려문에 뛰어났으나 급제 못한 趙裕壽	趙裕壽	응시자		諧謔性
8	여주 권생의 부정행위	李光佐	응시자	別試 會試	諧謔性
9	鄭彦燮의 안목	鄭彦燮	감독관	監試 會試	諧謔性
10	마장교에 황룡을 보려간 南九萬	南九萬	응시자	別試 會試	諧謔性

11	과거시험은 운에 달렸지	무명씨	응시자	式年 會試	諧謔性
12	과거에 무관심한 선비	무명씨	응시자	式年 監試	諧謔性
13	換封으로 인해 70세에 급제한 선비	무명씨	응시자	式年 會試	諧謔性
14	재치있는 대사성과 가혹한 永同 사또	무명씨	감독관	陞補試	諧謔性
15	金鎭圭가 뒤늦게 인정한 金春澤의 시문	金鎭圭 金春澤	응시자	陞補試	諧謔性
16	박태상의 조언으로 급제한 沈慶餘	朴泰尙 沈慶餘	응시자	監試	事實性
17	李喜朝의 조언으로 급제한 아버지	李喜朝 李箕重	친인척	陞補試	事實性
18	당과 때문에 급제한 중부 李台重	李台重 李德重	친인척	庭試	事實性
19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폐단	洪啓迪	감독관	陞補試	事實性
20	1694년 갑술환국 이후 급제한 서인들	淸城(?)	응시자	四學 合製	事實性
21	李箕鎭의 실제와 尹心宰의 반성	李箕鎭 尹心宰	응시자	陞補試 合製	事實性
22	증광생원시에 疑로 급제한 李敏坤	李敏坤	응시자	增廣 初試	事實性
23	시권을 제출하지 않은 李匡呂	李匡呂	응시자	八九抄 場(庚申)	諧謔性
24	제출하지 않았던 洪梓의 시권	李運永 洪 梓	자기 일화	陞補再 抄(丙寅)	事實性
25	대사성 李天輔와 연	李運永 李天輔	자기 일화	陞補試 (甲子)	事實性
26	이름 때문에 놀림의 대상이었던 尹勉升	尹勉升 柳元之	자기 일화	陞補 (己巳)	諧謔性
27	죽조인 李秉常의 일화	李秉常 尹 淳	친인척	陞補	事實性
28	陞補試 응시 때 靑坡接 구경	李運永 金履安	자기 일화	陞補 (戊寅)	事實性
29	李德洞이 감동한 어떤 유생의 賦	李德洞	감독관		事實性
30	40년 전과 지금의 감시 풍경	李秉常 李運永	자기 일화	監試	事實性
31	講經에 운으로 합격한 시골 선비	무명씨	응시자	東堂 初試	諧謔性

32	應講에 講을 하지 않은 선비	무명씨	응시자	東堂 初試	諧謔性
33	殿講에서 情慾 때문에 낙방한 선비와 應講에 대한 자신의 기억	李運永	자기 일화	殿講, 庭試 (辛未)	事實性 諧謔性
34	과거시험에 대한 기억과 自嘲	李運永 尹士述	자기 일화	陞補試 (丙子)	事實性

<표 1>을 통해 주목되는 점은 분류로 제시된 대상 인물인데 과거시험의 응시자, 감독관, 친인척, 자기 일화, 이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응시자에 관한 이야기는 18편으로 一措大나 某生 등과 같이 무명씨 이야기와 趙文命·南九萬·金春澤과 같은 유명 사대부들이 함께 등장한다. 더불어 감독관도 鄭彦燮·李德沔과 같이 실제 인물들이 등장한다. 친인척은 李運永의 아버지에서부터 외조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5편이다. 이 5편의 내용이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데 세부적으로는 감독관으로서 試券을 보는 안목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에게 조언하는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일화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이 7편에 이른다. 아울러 沈慶餘, 尹士述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등장한다. 즉 표면적으로 사실성이 부각된 작품이 18편이지만, 해학성과 관련된 작품들에서도 사실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주제 측면에서 「과장」은 어떠한가? 전편에 걸친 주된 양상은 과거의 부정사례이다. 야담을 현실과 관련된 유형으로 보자면 「과장」은 다른 야담집과 구별점이 확인되지 않는다.⁹⁾ 그런데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몇 가지 다른 특징점이 확인된다. <표 1>을 재구성하

9) 권기성(「야담에 나타난 조선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 -법과 정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161면.)은 야담을 과거 현실과 관련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입신양명에 절망하여 과거의 길에서 사라진 자들, 거벽이나 서수를 고용하여 과거에 급제한 자들, 몰락한 가문의 적자들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 과거 급제하는 이야기로 구분하였다.

면 다음과 같다.

<표 2> 「과장」 주제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해당작품(번호)	비고
부정사례 및 제도비판	응시자 부정	시권 대필	8, 22	1은 장편으로 전반부는 응시자의 부정, 후반부는 시관의 무능함으로 양분됨
		타 응시자의 도움	1, 4	
	관리자 부정	응시자와 潛通	6	
		파벌	18, 22	
	기타 부정	換封	13	
	제도비판	과거비용 및 운영	12, 32	
재능과 안목	유능한 試官	가계에 대한 자부	2, 3, 15, 16, 17	5, 10은 길몽을 꾸고, 31은 운에 의한 합격
		대사성의 안목	19, 29	
	무능한 試官	下試官의 무능함	1, 9, 14	
	응시자 재능	만년 합격사례	7, 11	
		꿈과 운에 의해 합격	5, 10, 31	
		외모와 불일치	21	
		엄격한 자기기준	23	
자기 일화	경험자의 진술	타 응시자 재능	24	
		안목	25, 26	
		과거 풍속과 폐단	28, 30, 33, 34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과거시험과 관련된 전방위적 서술이라 할 만큼 사례의 구체성과 다양성이다. 부정행위의 처벌에 대한 일화는 확인되지 않지만, 응시자와 관리자의 부정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의 비용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장」에는 선발방식과 그 공정함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내포된 작품들이 부각된다. 이는 재능과 안목이라는 주제로 귀결되는데, 試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試官에서부터 유능한 자들이 불합격되거

나 만년에 합격한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한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현된 이야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이운영은 1759년 38세 때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때까지 겪은 시험장에서의 경험은 「과장」³⁰과 「과장」³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과장」³⁴에는 自嘲의 진술을 통해 과거시험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등장인물과 주제별 분류를 통해 『영미편·과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장」은 야담임에도 과거시험의 종류와 장소, 시기, 시제 및 시험 서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내고 있다. 둘째, 과거시험의 주체인 응시자 및 관련 인물 등의 다양한 群像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급제와 낙방이라는 과거시험의 결과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難望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세밀히 구현되어 있다. 셋째, 1/3이 자신과 친인척에 대한 기록이다. 친인척에 대한 기록은 주로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연계되고, 자기에 대한 기록은 주로 회상을 통한 과거제도의 비판과 自嘲가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과장」에는 해학성 못지않게 사실성 또한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유명 사대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계와 관련된 인물들도 등장하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담까지 작품화했고, 神異한 이야기보다는 일상성과 사실성이 두드러진 이야기들이 「과장」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장」은 필기·야담집임에도 유래담을 再述하기 보다 자신의 직접 체험과 가계와 관련된 간접적 체험을 이야기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 전술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과장」에 수록된 작품들이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운영의 자기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Ⅲ. 『瀨尾編・科場』에서 드러난 事實性

1. 정치적 부정행위와 응시자의 대응방식

조선시대의 출세는 과거라는 통로를 거쳐야 했다. 제한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많은 갈등과 부정한 방법들이 출현하였다.¹⁰⁾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 錄名에서부터 放榜까지 여러 제도와 장치가 있었지만, 교묘하고 과감한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과장」에서도 다양한 부정행위가 등장하는데 주로 시험장 안에서 행해지는 방법들이 서술되어 있다. 먼저 「과장」6에서 가장 나중에 시권을 내기로 약속한 것에서 시관과의 潛通을 볼 수 있다.¹¹⁾ 「과장」8에서는 남의 글을 빌리는 借述¹²⁾, 「과장」22에서는 대리시험을 치는 代述¹³⁾, 「과장」11에서는 과거시험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隨從帶同¹⁴⁾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공통적인 면모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대부분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科擧를 소재로 한 여타 필기・야담집과 비슷한 면모이다. 하지만, 『영미편』에서는 구체적인 사건과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확인된다.

-
- 10) 과거부정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무(『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주), 2004, 252~258면)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 11)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6, 11면. “科場之有關節蹊逕, 其來久矣. 昔者, 春塘試士, 有京華士子, 與命官約以呈券於最末軸最末張.”
 - 12)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8, 16면. “這進士, 自是尖尖弱骨, 輕如秋葉, 被權公之肩磨膝逼, 不覺四大全身退出柱外. 試文也, 猶屬餘事, 此身之退出柱外爲憊悶, 乃出袖中草藁, 示權公.”
 - 13)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22, 37~38면. “姜聘君與李司諫敏坤, 多年同研於公車文. 某年增廣初試初場, 同席坐做論, 李公見姜公草藁起頭七八行, 乃移席去他處. …… 李公怪而問姜公曰, “君俄者做論, 今又持疑心券來, 何也?” 姜公曰, “俄者之論, 爲李父製呈, 今此券乃吾之券也.””
 - 14)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11, 20면. “赴擧則兩子隨入父, 雖醉倒, 兩子一製一寫, 榜出輒高中, 然會試則每曳白, 前後發解, 近二十次.”

특히 숙종 시기에는 봉당정치 하에서 ‘科獄’이란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과거 부정의 실상이 심각하였다. 이 시기 『受教輯錄』과 『典錄通考』의 편찬과 보급이 부정사례 증가를 방증한다. 이후 과거제도의 준수라는 엄격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新補典錄通考』에 보면 영조 때에도 부정과 관련된 각종 수교 항목을 살필 수 있다.¹⁵⁾

영조 경술년(1730) 庭試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의 시제는 바로 본조 실록청에서 撰進한 『肅廟寶鑑』이었다. 우리 중부인 判書府君은 回題 밑의 단구에서 “別錄같은 책에 더욱 大義가 있겠지.”라고 했다. 같이 시험 보던 아무개가 말했다. “오늘 考官은 모두 少論이네. 자네의 단구는 곧 老論이라는 자기소개이니, 이렇게 하고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부는 “떨어지더라도 이런 試題를 만나 이런 句를 써야만 노론의 習氣와 性癖이 있는 것이니, 나는 꼭 쓰겠네.”라고 시권을 냈다. 당시 三從叔 監司公도 이 구를 썼다. 이날 고관은 사람을 편파적으로 골라 뽑았는데, 노론 1, 2명을 뽑아줘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 다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중부와 종숙의 시권을 보고 곧바로 ‘三下’라 썼다. 이 방에는 모두 20명이 들었는데, 우리 중부와 종숙 말고는 더 이상의 노론은 없었다.¹⁶⁾

이운영은 당시 시험관 모두가 少論이라 소론계열 사람들만 합격시켰다고 하였다. 다만 소론계열만 합격시켰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론계열 사람들도 몇 명 뽑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자신의 중부와 삼종숙이라 말하고 있다.

15)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130, 한국사연구회, 2005, 111~117면 참조.

16)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18, 34면. “英廟庚戌, 庭試取士題, 乃本朝實錄廳進肅廟寶鑑也. 我仲父判書府君, 回題下短句曰, “至於別錄之書, 尤是大義所在.” 同坐者某人曰, “今日考官純是少論, 君之短句, 卽老論名啣, 如此而能不見黜乎?” 仲父曰, “雖見黜, 遇此題而用此句, 方是老論習氣性癖所在, 吾則必用.” 遂呈券. 時三從叔監司公, 亦用此句. 是日考官, 頗物色取之, 欲得老論一二人塞責之, 顧無以知之, 及得吾仲父從叔券, 直書三下. 蓋是榜二十人, 而吾仲父從叔外, 更無老論.”

주지하다시피, 숙종과 영조시대 당파갈등은 치열하였다. 남인을 밀어내고 집권세력이 된 서인은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분파되었는데,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하자 소론은 노론과 영조를 제거하기 위해 1728년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다. 난이 진압된 이후 노론의 권력장악이 가속화되었는데, 영조는 오히려 탕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론계열 인사들을 등용하였다.¹⁷⁾ 더욱이 자신의 탕평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李堦, 尹淳, 徐命均, 李廷濟, 柳儼과 같은 인물을 신임하였다.¹⁸⁾

그런데 이들은 모두 1730년 庭試의 시험관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또한, 장원급제자는 李時熙(1694~1755)로 소론계열 인물이다.²⁰⁾ 『國朝文科榜目』과 『科儼』에 의하면, 이 시험은 영조 6년인 1730년 2월 15일에 있었으며 시제는 ‘擬本朝纂修廳進先朝寶鑑, 仍請克勤克敬, 繼述先王之至德, 休揚先王之洪烈’로²¹⁾ 숙종을 世室에 봉안한 후에 시행한 것이다. 시제 ‘本朝纂修廳進先朝寶鑑’에서 가리키는 책은 『肅廟寶鑑』인데,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에서 이운영의 중부는 李台重(1694~1756)이고 삼종숙은 李德重(1702~?)이다. 인용문에서 이들은 20명 중에 三下로 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태중은 20명 중에서 18등, 이덕중은 12등으로 합격하였다. 따라서 인용문에 기록된 시험과 시제, 그리

17) 『영조실록』권22, 5년, 4월 25일.

18) 『영조실록』권22, 5년, 6월 6일; 『영조실록』권22, 5년, 8월 18일

19) 命官은 李堦이고 讀卷官은 尹淳, 徐命均, 李顯祿, 宋成明, 洪鉉輔, 李廷濟이며 對讀官은 李德壽, 朴乃貞, 吳命新, 魚有龍, 金尙奎, 柳儼, 鄭羽良, 趙明翼, 柳運, 李憲이다.

20) 『영조실록』권25, 6년, 2월 17일. 합격자 명단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李時熙, 李山培, 尹敬龍, 李顯良, 趙榮國, 李重寅, 金始煒, 鄭履儉, 宋教明, 洪正輔, 成範錫, 李德重, 曹命敬, 沈埜, 李錫福, 李元煥, 朴師昌, 李台重, 鄭廣運, 洪重一. 『國朝榜目』(장서각본), 148면 참조. 방목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활용하였다.

21) 이 글에서 인용된 과거시험 자료들은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팀에서 구축하고 있는 DB를 활용하였다.

고 이태중과 이덕중이라는 인물은 공적 기록물과 일치한다. 물론 시험관이 소론이라 소론계열의 인물만 합격했다는 부분은 노론계열인 이윤영 개인 및 특정 당파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반대파의 입장에서 바라본 당시 정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태중이 작성한 시권에 있다.

이태중은 시권에 “至於別錄之書, 尤是大義所在.”라고 썼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노론임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 서술이 이태중의 당파를 밝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내용은 回題 밑에 단구에 썼다고 하였다.²²⁾ 답안의 내용은 ‘별록에 더욱 대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노론의 習氣와 性癖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영조 3년인 1727년 완성된 『숙종실록』은 노론의 주도로 편찬되었기에, 소론은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론은 『숙종실록』의 개수를 청하게 되었는데, 이때 영조는 補闕만 허락하여²³⁾ 1728년 3월에 『肅宗實錄補闕正誤』가 완료된다. 또한, 시제로 등장한 『숙묘보감』은 1730년에 소론인 尹淳(1680~1741)의 주도로 완성한 것이다. 이에 노론인 이태중은 이미 완성된 『숙종실록』을 다시 거론한 자체가 불만이었을 것이고, 시제로 등장한 『숙묘보감』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별록에 더욱 대의가 있겠지’란 문장은 이미 완성된 『숙종실록』이 있는데도 별도의 『숙묘보감』을 만들어 이 책에다 대의를 두려는 소론의 행태를 조롱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 당파에 의해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과장」²⁰⁾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1694년 甲戌換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남인이 폐비민씨 복위운동을 반대하다가 실권하고 서인이 재

22) 이 시험의 문제는 進箋이기에 이 구절은 14구에 해당한다. 科文에서 進表나 進箋의 경우, 題初 5구~7구, 次項 8~10구, 回上 11구~13구, 回題 14구~19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병혁, 「과문의 형식고(II)-표·책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2, 동양한문학회, 1987, 178~180면 참조.

23) 『영조실록』권13, 3년, 9월 18일.

집권하게 된다. 1694년 겨울 이전까지 남인계열 인물들이 대거 뽑히다가 이 사건 이후 서인들이 다시 出榜에 포함되었다고 기술하였다.²⁴⁾

전술하다시피, 肅宗代에는 科獄이라 할 만큼 과시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특히 특정 당파에 의해 과거시험의 근저인 선발에서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02년 壬午科獄에서는 집권 세력인 노론이 양성사에서 노론 명가자제들을 대거 합격시켰으며, 1712년 壬辰科獄에서는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던 소론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5년간 지속되었고, 이를 둘러싼 소론과 노론의 대립은 치열했다.²⁵⁾

위의 인용문 또한 이런 국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사건 자체에 대한 새로움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적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당파대립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응시자의 입장에서 시권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시험의 당사자 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 점은 당파갈등으로 기록에서 배제된 개인, 아울러 당파에 휩쓸리는 개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시기 과시의 폐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력형이자 黨派의 독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특정 권력이 과거시험 문제에서부터 시험관, 채점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당시 집권 세력이 과시를 장악하려 했던 행위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시 존립의 근거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24)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20, 35~36면. “肅廟甲戌, 南人當局四學教授, 皆已設四等學製, 每榜南人九人西人一人, 西人被抄者合爲十六人. 是冬南人皆黜去, 清城爲國子長, 將行合製, 一日因人紹介邀致十六人中一人問曰: “尊之文筆, 何如?” 對曰, “平平無過人, 但猶人而已.” …… 其人乃寫之, 清城曰, “合製日, 尊勿自作文, 只寫十六卷.” 其人入場, 寫十五人卷, 要十五人合力作自己文以呈之. 清城只取此十六人, 出榜.”

25) 科獄과 관련된 사건의 경위는 우인수(앞의 논문, 98~107면)의 논문과 차미희(『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154~183면)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弊習 및 관리 대응 방식

17세기 이후 과거 응시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7세기 전 반에는 2,000명~4,000명 정도였다가 숙종대 이후에는 대략 10,000여명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 科場을 확장해야 할 만큼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응시자의 증가가 채점 답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자, 채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로 거론된 것이 收券 시간의 제한인데,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부족한 채점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숙종 때 收券에 대한 논의는 1684년 9월 정시의 채점 방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수권 시간을 늦추자는 金壽興과 답안 채점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 南九萬이 서로 대립하다가 친림시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人定에 제한하고 시간을 넘겨 제출한 답안은 받지 않는다는 ‘限後勿捧’의 원칙이 마련되었다.²⁶⁾ 그렇다면 이후 수권의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 (前略) 대부가 말했다. “옛적에는 너처럼 어리고 글이 익지 않는 자는 애초에 시험장에 들어오질 못해서, 응시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내 어릴 때 東學과 답장을 사이에 둔 집에 살 때를 기억해보면, 시험이 열리는 날에 나는 종일 답장 밑에 서서 시험장 동정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대청 위에서 크게 외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권을 내지 못한 유생은 退去하라 했지만, 유생들은 계속 시권을 써서 반드시 장막 뒤로 넣고자 했다. 그럴 때면 군졸들이 세 겹으로 끈 굵은 새끼줄의 양 끝을 쥐고 온 뜰의 유생들을 몰아내는데, 유생은 빈 시권을 갖고 돌아오는 걸 큰 수치로 여겼기에, 죽어도 백지 시권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해서 문을 나가면 발돋움하고 몸을 날려 그 시권을 답장 밖에서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30장 혹은 40여장을 주웠는데, 반쯤 쓴 것, 서너 줄 쓴 것, 또는 점 하나도 찍지 못한 것들을 가져와서 글자 연습을 하면 아주 좋았지. 아! 이때가 벌써 50여 년이 흘렀으니 人士의 많

26) 친림시의 경우 당일 出榜해야 하기에 대부분 午時전후(오전11~오후 1시)로, 殿試의 경우는 人定(오후 10시)으로 제한하였다.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86~115, 123~125면 참조.

고 적음, 文體의 盛衰, 선비의 풍습의 不正함이 참으로 많아졌구나.”

② 지금 계산해보니 봉조하 대부분에 말씀을 들은 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온갖 것들이 변화했지만 하나라도 어찌하지 못했다. 옛사람은 백지 시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수치로 여겼지만, 지금 사람은 도리어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백지 시권 내는 것을 고상한 풍치로 여긴다. 유생의 수는 80·90년 전보다 10배는 되는지라 學製를 中學과 西學에서 시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도, 지금도 예전대로 시행하며 바꿀 생각조차도 안 하니, 이 때문에 유생 중에는 시험장에 들어오지 않고 여염에 앉아 써내는 자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 앉아 써내는 자도 있다. 이는 진실로 단정치 못한 선비의 풍습이며 兩學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조정에서 이를 고칠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²⁷⁾

인용한 「과장」30에서는 이운영이 李秉常(1676~1748)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 1690년대 시험장의 광경을 보여준다.²⁸⁾ 특히 ①에서는 이 시기 수권과 관련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생들은 빈 시권을 갖고 돌아가는 걸 큰 수치로 여겨서 문을 나가면서 발돋움하고 몸을 날려 그 시권을 담장 밖에서 안으로 던져 넣었다고 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시험

27)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30, 43~44면. “(前略) 奉朝賀大父曰, “在古則如汝幼沖文不熟者, 初不入場, 人士不至甚多矣. 記余童時寓居東學隔牆屋子, 遇開場日余終日立於牆下, 聽知場中動靜. 時限過則自廳上大呼, 時已過未呈券儒生退去, 然儒生猶寫券, 必欲納於帳後. 於是, 以三股絞綯大藁索, 軍士持其兩端, 毆去滿庭儒生, 儒生以曳白爲大羞恥, 死也不欲持曳白券, 出門乃跣足跳身, 擲其券於牆外. 余每拾得二三十張, 或四十餘張, 有寫半者數行書者, 又或有不下一點墨者, 取而習字極好矣. 噫! 是時去古爲五十餘年, 人士之多寡, 文體之盛衰, 士習之不正, 固已多矣.” 今計余承聞奉朝賀大父之詔諭, 居然已爲四十餘年, 其間凡百之變改, 不一奈之何, 古之人以曳白爲羞恥, 今之人反以晚呈限後曳白爲高致. 儒生之多, 十倍於八九十年之前, 學製之設於中西學, 乃萬萬行不得之事, 而至今因循, 不思矯改, 所以儒生之不入場, 坐於閭家而製呈者有之, 甚至於在家而製呈者亦有之. 此固士習之不端, 而開場於兩學, 乃不成事理. 朝廷之上, 不思矯改之道, 爲可慨耳.”

28) 『영미편』은 이운영이 60세가 되던 1781년에 완성되었기에 이병상과의 대화 시기는 1740년대이다. 또한, 이 대화에서 등장하는 과거 시험장 모습은 이병상의 50년 전 회상이므로 1690년대이다.

시간이 지나면 답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1684년에 마련되었지만, 시간 때문에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관들이 수권을 엄격하게 수행하지 않았다.²⁹⁾ 해서 ①에서 보듯이 시험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권을 제출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숙종대 뿐만 아니라³⁰⁾ 영조대를 넘어 정조대에 이르러서도 개선되지 않는 과거시험의 폐단임을 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이운영은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과거시험의 폐단을 개탄하였다. 무엇보다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시험장의 부족과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 1779년 기사에 보면 시험장이 부족하여 근방 閭閻에서 시권을 써도 금단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시험의 기강이 손상되었다고 하였는데,³¹⁾ 인용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②에서는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애초 응시자들이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이유는 차마 백지로 낼 수 없다는 자존심에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이 행위는 고상한 멋으로 포장되었는데, 그 실마리는 「과장」²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유생이 시권을 제일 늦게 내고자 하다가 다음날 새벽까지 신중하게 시권을 작성하는 李匡呂(1720~1783)를 발견하였고, 그가 최상위로 합격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자신이 居首로 합격하였고, 차후 이광려가 힘들게 지었던 시권이 마음에 들지 않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³²⁾ 이처럼 시권을 늦게 내거나,

29) 『숙종실록』권32, 숙종 24년 10월 4일. 이때(1698년) 수권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은 시관과 감시관을 파직시켰다.

30) 『숙종실록』권21, 효종 10년 2월 16일.

31) 『정조실록』권5, 정조 2년 1월 22일.

32)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23, 38~39면. “有儒生某多年遊泮庠場, 平生至願, 乃呈券於末軸末張, 不能爲. 庚申年八九抄場, 意塞三更後始圓篇, 寫券視場中虛無人. (中略) 某儒大驚問曰, “鷄將鳴矣, 今亦有未呈券者乎? 李書房是何許人乎?” 吏曰, “新門外盤池邊李書房, 名是匡呂, 尚未呈券.” 又問 “李在何處?” 曰, “方在此廳底.” 某儒乃坐而諦視之黑暗中, 微有火光, 透照藁席外, 乃揭席而入見

엄격한 자기 기준에 의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미담으로 인구에 회자되었다.³³⁾ 또한, 이광려와 같이 인품과 문장을 겸한 선비에게 부여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에 유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고상한 선비의 척도라 여겨 유행처럼 따라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애초 응시자의 자존심과 연계되었던 수권 시간은 轉流되어 弊習으로 변화하였고, 여기에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응시자들의 그저 따라하기 풍조가 더해져 收券은 과거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초가 되었다. 지금까지 응시자 입장에서 수권을 바라보았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수권은 어떠했을까?

泮庠의 製述試에서 유생들이 한가롭게 답소하며 시권을 늦게 내는 일을 고상한 멋으로 여긴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洪啓迪이 대사성으로 있을 때 陞補試를 실시했다. …… 午時の 반이 지났을 때, 한 유생이 시권을 냈다. …… 조금 뒤 또 한 유생이 시권을 내자 또 ‘二下’를 써서 揮場하며 말했다. …… “높은 등수가 이미 많이 나와서, 이후에 내는 시권은 ‘次上’외에 다른 등수는 없을 것이니, 유생들은 잘 알도록 하라.” 이에 온 시험장의 유생들이 허둥대기 시작하니, 마치 北虜가 압록강을 건너고 倭寇가 대마도를 건너다는 소식을 들은 듯했고, 또 큰 바다 가운데 뱃사공이 갑자기 광풍을 만난듯이 하여 모두 갈팡질팡하며 초고도 짓지 않고 시권을 펼쳐 날듯이 써나가니 옥석을 가릴 겨를도 없이 황급히 써서 앞다투어 시권을 냈다. …… 방목을 낸 후 洪公이 말했다. “오늘 일찍 낸 詩賦가 예전에 촛불 아래에서 고심하며 지은 작품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내 알았네.” 洪公이 대사성으로 있을 때, 많은 유생 중에 옛날의 시권을 늦게 내는 弊習을 감히 따라하는 자가 없었다.³⁴⁾

之, 李以木綿被圍其身, 展開券紙, 置于前券面三層六間, 每間皆已書詩句, 而但每句空一字或二三字, 李方苦吟覓字, 以手敲椎得字, 則乃寫填於空處, 倦則滅火而臥. 某儒出來坐廳前, 以觀其動靜, 良久李呼小奴, 使舉火. 某儒又入見, 李又苦吟得字而寫填, 又滅火. 如是凡七八次, 某儒不堪支離, 遂不復入見而出歸, 但見李作多歎服處, 意謂今番李必居魁. 及榜出則某儒居魁, 榜無李名. 某儒甚怪之, 後數日, 索見自己券, 券背書月字軸, 始知李之當日曳白, 自己之末張呈居魁, 不自以爲光鮮也.”

- 33) 「과장」24는 저자의 체험담이다. 이운영은 자신보다 훌륭하게 시권을 작성한 洪梓가 그 답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관한 안타까움을 기술하였다.

이 글은 洪啓迪(1680~1722)이 대사성으로 재직했을 시에 시행되었던 陞補試가 배경이다. 그는 1719년 3월 27일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그 후 임으로 金在魯(1682~1759)가 동년 4월 29에 임명되었다.³⁵⁾ 대사성은 四學의 유생에게 매달 1회씩 승보시를 시행하였는데, 4월 7일 다음날 있을 승보시의 試官 명단에 홍계적이 보인다.³⁶⁾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시험은 1719년 4월 8일 二所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인용문에서도 收券의 제한 시간은 午時인데, 여전히 유생들이 시권을 늦게 내는 일을 고상한 멋으로 여겼다. 그러나 대사성 洪啓迪이 시권이 제출될 때마다 등급을 매겨 남은 등수를 크게 외치자 유생들의 반응이 돌변한다. 이운영은 유생들이 시권을 허둥지둥 제출하는 모습을 “如聞北虜渡鴨綠江, 倭寇越對馬島而來”라 표현하였다. 이후 홍계적의 말을 통해서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풍조가 얼마나 弊習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과장」19의 이야기는 유생들의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풍조가 얼마나 무용한지 보여준다. 홍계적의 수권 방식은 記事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에 이와 같은 방법이 당대 통용되지 않았거나, 시행되었지만 일시적인 방법에 그쳤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收券에 대한 당대의 고심과 해결책이 기관이 아닌 개인적 측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은 현실적 결핍에 대한

34)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19, 34~35면. “泮庠製, 儒生之談笑閒說話以晚呈卷, 爲高致者, 其來久矣. 洪公啓迪長國子, 設陞補. …… 乃於午時正中, 有一儒生呈券. …… 俄而又一儒生呈券, 又書二下揮場曰, …… “巍等已多出, 此後呈券, 次上之外, 恐無他等, 多士知悉.” 於是滿場多士, 撓撓攘攘, 如聞北虜渡鴨綠江, 倭寇越對馬島而來, 又如大洋中梢工忽遇狂風, 皆手忙脚亂, 不屬草藁, 展開試券, 飛也似揮灑去, 未暇取捨玉石, 忙忙寫了, 爭先納券. …… 榜出後洪公語曰, “今日早呈之詩賦, 吾不知其遜於前日燭下苦吟之作.” 洪公在國子時, 多士無敢更踵昔日晚呈之習者.”

35) 『숙종실록』권63, 숙종 45년 3월 27일;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4월 29일.

36) 『승정원일기』책515, 숙종 45년 4월 7일. “明日監試初試一所試官三, 趙泰億·申哲·趙鎮禧落點, 二所試官三, 洪啓迪·宋成明·金礪落點.”

보상이므로, 시대의 목소리 및 수권 폐습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收券을 통해 應試者의 증가에 따른 과거제도의 한계와 관리자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과거는 제한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이기에 많은 부정행위가 속출하였고, 특히 숙종 대에는 응시자의 증가와 관리 부실로 부정행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시권의 제출 시간을 제한하는 수권의 문제는 숙종 대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과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시권을 늦게 제출하려는 응시자들의 풍조가 弊習으로 굳어져 시험 시행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절에서는 조선후기의 과시 관련자들인 응시자 및 관리자 입장에서 수권의 문제점과 폐습의 심각성을 곡진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 곡진함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현된 것이기에, 현장성 또한 담고 있다.

3. 관리강화에 따른 운영 정비의 일단

과거시험은 크게 제술과 강경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강경은 구술시험이다. 원래 경서의 본문이나 주소의 一行만 남겨 놓고 그 앞뒤를 덮고, 다시 一行 중의 몇 자를 덮고 알아맞히게 하는 帖經과 경서의 뜻을 묻는 口義가 있다.³⁷⁾ 이 중 口義를 講經이라 한다. 성종 초부터 강경은 사서삼경 등 정해진 책의 구두와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식년시 문과 복시 조장에서 실시하였다.³⁸⁾ 그 외 나머지 시험은 모두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제술이었다.³⁹⁾ 숙종대 이후에는 庭試가 자주 시행되자 京儒는 제

37) 조좌호, 『韓國科擧制度史研究』, 범우사, 1996, 136면.

38) 魚叔權, 『稗官雜記』2. “本國科擧, 舊無講經之制, 雖式年, 只以兩場製述, 取十三人. 其後每於式年, 臨時或講或不講, 而講經居多. 自成廟初, 始定式年講經之法, 別試則無定規, 或講或不講, 而其講書之時亦只講經書中兩書, 或取畧上者, 或取粗以上者, 此其大槩也.”

39) 강경보다는 제술시험이 주를 이루자 성종 9년(1478)에는 강경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明經試가 실행되어 식년에 시행되는 명경시와 비정기시인 명경

술을, 鄉儒는 강경을 위주로 하면서 과거시험은 이원화되었다.

「과장」에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된 강경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응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강경시험의 면모 및 記事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강경 시험장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이운영 자신의 경험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과장」³¹은 講을 잘하지 못하는 어떤 선비가 식년시 복시에 합격한 이야기이다. 그 선비는 점을 쳐서 7개 경문을 뽑아 외웠는데 7개 중에서 6개가 점괘에서 나왔던 것이고 마지막 1개만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출제되었다. 이에 선비는 낙방을 예상하고 뒷간이나 다녀오겠다고 하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졸을 대동하였는데, 군졸과 농담을 주고받다가 전에 인연이 있었던 기생의 편지를 군졸을 통해 받게 되었다. 그때 다른 시험관이 응시자인 선비에게 있는 편지를 멀리서 보고 부정행위라 의심하여 다른 문제를 제출하였고, 이 문제는 점괘에 나왔던 것이라 마침내 通을 받고 합격한 이야기이다.⁴⁰⁾

이 이야기는 朴亮漢(1677~1746)의 『梅翁閑錄』과 전대문헌을 개작한 19세기 『靑邱野談』 및 『記聞叢話』에서도 확인된다. 차이점이라 한다면 「과장」³¹에서 무명씨로 설정되어있던 인물이 모두 呂聖齊(1625~1691)로 되어있는데, 그는 1654년(효종 5년)에 식년시 초시에 합격하였다.⁴¹⁾ 이들의

별시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나 조선후기에 폐지되었다. 오히려 16세기 이후 별시·정시 등 제술만 치르는 시험이 늘어나자 강경은 식년시 문과 복시 초장과 식년시 문과의 典禮講, 생원·진사시의 照訖講, 學禮講 등 예비시험에서만 실시되었다. 원창애 외 5명,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71~197면 참조.

- 40)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31, 44~46면. “世或有弄假成真者, 曾有一箇措大能製而不能講者, 赴東堂中初試者, 親舊皆以不緊沒着落笑之, 措大亦安而受之. 及到會試期迫, 問卜者得七大文講章. 誦習之不數日, 便融會貫通, 開口背誦, 無一字錯誤, 遂赴講席, 連出六講章, 皆一如占辭. 已是誦習爛熟, 並無事出枉, 至於第七出講章, 乃非占辭所云而未嘗誦者也. 指大乃以虛腸爲托, 討食數三次自帳內, 數加催促, 又托裏急, 請如廁歸, 而應講試官許之, 而使軍士一人伴去防奸. (中略) 卽改出他大文, 乃是占辭所曾出者也. 措大即以霹靂講一瞬之頃竝大文諺釋章下註, 如熟路之驅輕車, 氷江之馳雪馬, 讀了已了, 試官皆相顧稱贊, 而出通牒. 是措大公然做明經及第.”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시험의 배경은 1655년 식년문과 복시이다. 복시 또한 초장·중장·종장 3단계로 되어있는데, 초장에서 四書三經을 강하였다. 「과장」³¹과 같이 사서삼경에서 하나씩 총 7개의 大文이 제출되고 諺釋과 章下註까지 외워야 粗 이상의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다.⁴²⁾

그렇다면 강경시험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그 대체적인 과정은 成倪의 『慵齋叢話』에 소개되어 있다.⁴³⁾ 무엇보다 엄격한 절차가 주목되는데, 그 주된 목적은 시관이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을 방지하

41) 김동욱 옮김, 『國譯 紀聞叢話』下, 아세아문화사, 2008, 138~139면. 『梅翁閑錄』(천리대본 299화, 장서각본 40화, 패림본 42화) 및 『記聞叢話』(연세대본 412화)의 이야기는 『영미편』 후반부의 내용과 흡사하다. 창작시기를 고려해 볼 때 이운영의 『영미편』, 「과장」³¹은 『梅翁閑錄』을 바탕으로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야담』 권1(버클리대본)에서는 무명씨가 여성제로 설정되어있는데, 이 점을 제외하면 『영미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이강욱 옮김, 『청구야담』상, 문학동네, 2019, 190~194면). 서술방식도 『영미편』처럼 대화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다른 지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42) 강경은 通·略·粗·不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粗 이상이 합격이다. 『經國大典』 권3, 「禮典」에 의하면 구두·훈석이 오류가 없고, 강론이 博通은 아니지만 大旨을 잃지 않는 자를 粗, 구두·훈석이 분명하고 大旨에 통하나 融通하지 못한 자를 略, 구두·훈석이 精熟하고 旨趣가 융통하며 辨說이 명쾌한 자를 通으로 한다고 하였다. 한편, 강경은 채점기준이 모호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글자와 구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강경은 유생들에게 기피되는 시험이었다. 더욱이 가을에 초시에 합격한 이후 그다음 해 봄에 실시되는 복시까지 대략 5~6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이에 「과장」³¹에서처럼 점괘와 같은 선택적인 방법으로 강경 시험을 준비하였다. 사서오경의 본문 글자 수 43만여 자, 이를 하루에 2백 자씩 외울 경우 6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중국사연구회 역, 『중국의 시험지옥 과거』, 청년사, 2001, 32면) 조선시대 유생들은 평소 사서삼경을 공부했지만 암송시험을 앞두고 절에 들어가는 등 집중적으로 외우는 것은 별도의 공부였다.(차미희, 앞의 책, 2012, 201면.)

43) 成倪, 『慵齋叢話』 권2. “講經之法, 書字號付於四書五經, 又書字號於性貯筒中. 舉子書所講書名而納之, 試官抽性, 如抽天字, 則考經書所付天字, 只書大文以授. 舉子讀大文釋之, 試官講論註疏, 胥吏書通·略·粗·不四字, 以爲講籤, 各置於試官前. 一書講畢, 則胥吏持虛撰, 從下而上, 試官以次點講籤, 從多取之.”

는 데에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이후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장막을 쳐서 응시자와 시관이 서로 볼 수 없게 하자는 隔帳法이다. 이는 『大典後續錄』의 “講經試, 隔帳試講”에서 보듯이 종종 39년 정식화되었고, 숙종 31년 『典錄通考』에 의하면 시관이 응시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였다.⁴⁴⁾ 하지만, 講問할 大文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다시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시관이 임의대로 정하던 大文도 응시자가 찌를 뽑아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⁴⁵⁾

영조대에는 강경시험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와 함께 親臨試를 시행하였다. 영조는 모든 문과와 성균관 시험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는 경학에 대한 중시와 함께 과장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이와 같은 당대의 배경을 살필 수 있다.

㉠ 한 조대는 본래 經에 정통하여 여러 차례 應講했지만 講章을 보면 반드시 잘못 읽어 낙방했다. 아주 늦은 나이까지 太學의 下齋에서 지냈는데, 親臨殿講에 응시하여 또 불합격하고 나오자 친한 친구가 와서 물었다. “이번에는 또 어찌하여 不通을 맞았는가? 어느 經, 어떤 大文, 무슨 글자를 잘못 읽었는가?” 조대가 말했다. “운수인지라 어찌할 수 없네. 내 눈 속과 마음에 뻑뻑하게 들어선 시경, 서경, 주역, 증용, 대학, 논어, 맹자의 大文은 大註와 小註, 諺解와 더불어 분명하게 새겨져 있네. 내 목소리도 큰 종소리처럼 唇聲, 齒聲, 舌聲이 모두 五音六律과 조화로웠으니, 내 어찌 講을 하고서 떨어질 리 있겠는가? 예전에 여러 번 떨어진 것은 강석이 매번 어수선해서 내 마음이 번번이 동요해서이네. 장 밖에서는 서리와 대간이 기침하는 소리, 읊하며 인사하는 소리가 나고 장 안에서는 시관들이 토론하거나 사적으로 수작하며, 讀講 때는 부채로 책상을 치며 칭

44) 『增補文獻備考』권187, 「選舉考」4. “科舉講經試, 隔以來帳, 使不得與舉子相見, 臺諫則分坐帳外, 舉子入門時錄名, 舉子名下及其名紙上端, 書填字號.”

45) 위와 동일 : “四書三經, 勿論大小, 大文抽籤試講, 先將四書五經每篇大文自一至終, 通計某篇幾大文, 開錄置立冊子, 又於大文上紙頭, 書一二三四次第, 又將竹柱, 書數目從大文最多之篇自一至終. 臨講時, 庸·學外諸書, 只書篇名于竹柱, 倒插一箇抽柱, 考其篇大文之數, 將數目竹柱, 依數倒插于箇, 旋抽一柱, 考其紙頭所書, 次第試講.”

찬하는 것 등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내가 매번 떨어진 것이네. 이번에는 예전 응강과 달랐지. 殿에 올라 主上께 절하고 강석에 앉으니 시관, 승지, 翰林注書들이 모두 엎드려 고개를 숙였고 사방에 기침소리, 읊하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온 전각 안이 엄숙하고 고요했네. 御座 앞에서는 향로의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휘감는 푸른 향내가 사람에게 스며들더군. 이 당시 내 마음은 고요하고 정신은 집중되어 7개 중에서 6개의 講章을 이미 다 통과했으니 급제는 내 손 안에 든 물건일 뿐이었지.” (중략)

[2] 지난 辛未(1751년)에 내가 庭試初試에서 응강을 시작하자마자, 장 안팎의 기침 소리에 몹시 괴로웠고 부채로 땅을 두드리며 하는 칭찬 때문에도 몹시 괴로웠다. 장 밖의 서리들이 엉덩이를 들고 엎드린 채 머리를 쳐들고 뚫어질 듯 똑바로 나를 쳐다보면 마치 엎드린 청개구리가 눈을 부릅뜨고 풀벌레를 노려보는 것 같아 괴롭기 그지없었다.⁴⁶⁾

인용문은 시험 종류와 내용상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1]은 親臨殿講에 응시한 무명씨 이야기이고, [2]는 庭試初試에 응시한 이운영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1]에서의 殿講은 1년에 4차례 성균관과 사학의 居齋하는 유생 중에서 일부를 낙점하여 경서를 강송하는 시험으로 조선후기에는 四孟朔이나 짝수 달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日次殿講이 제도화되었다.⁴⁷⁾ 이 글에서는 응시자의 말을 통해 전강 시험장 분위기를 구체적으

46) 李運永, 『瀨尾編』上, 「科場」 33, 46~48면. “一措大, 自是雄經, 累次應講, 而見講章則必動誤讀而落第. 最晚年居太學下齋, 赴親臨殿講, 又不通而出來, 知舊往問, “今番又胡爲而不通? 誤讀者是何經書何大文那箇字乎?” 一措大曰, “數也, 無可奈何. 吾之眼中及肚裡, 森然布列詩·書·易·庸·學·論·孟大文, 與大註小註, 竝諺解開刊得分明, 我也聲如洪鍾, 唇聲·齒聲·舌聲, 皆足以協五音六律, 吾寧有講不通之理? 向者累次不通者, 講席每紛擾, 吾心輒動. 帳外之書吏也臺諫也, 咳嗽聲唱喏聲, 帳內諸試官之爭難也, 私酬酢也, 讀講時以扇拍案而稱贊者, 無非動心處, 所以吾每不通者也. 今番則異於前之應講, 既陞殿曲拜, 坐講席, 諸試官承旨翰林注書, 皆伏抑首, 四面無咳嗽唱喏聲, 一殿之內, 肅肅穆穆, 御座前, 香爐篆烟綠青香氣襲人. 當是時, 吾心清意專, 六講章, 竝已純通, 及第已是吾掌中物耳.(中略) 往在辛未, 余以庭試初試, 一經應講, 蓋帳內外咳嗽聲極苦, 以扇拍地稱贊又極苦. 帳外之書吏, 高其尻低其肩背昂其首, 眼欲穿而直看我, 恰似青蛙之伏而努眼視草虫者, 爲極苦之最甚者.(下略)”

47) 영조는 수시로 성균관에 거제하는 유생들 대상으로 하는 到記殿講을 시행하였

로 묘사하고 있다. 우선 강석에 오르는 응시자의 심리적 부담은 상당했다. 『於野談』에 따르면 시관에게 청심환을 달라고 할 만큼 극도의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그런데 엄격한 절차만큼이나 시험장 분위기도 엄숙할 거라는 예상과 전혀 다르다. 장 밖에서는 서리와 대간이 기침하는 소리, 읊하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 안에서는 시관들이 토론하는 소리, 부채로 책상을 치며 칭찬하는 소리 등 어수선했던 분위기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응시자는 마음이 동요되고 집중할 수 없어 매번 강경시험에 떨어진 것이라 그 이유를 항변한다. 그런데 이번 강경시험은 親臨이라 시험장 분위가 고요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강경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만큼 과장은 엄격히 관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숙종대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였지 시험제도 자체의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영조대에는 식년시 개선에 미온적이었지만 庭試에는 적극적이었다.⁴⁹⁾ 정시 초시에는 賦와 表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간혹 초시 합격자들 상대로 講經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영조는 과거시험에서 제술보다는 강경을 더 중시하였기에, 증광시 및 정시에도 경서를 배강하는 一經講을 실시하였다. 즉 문과뿐만 아니라 소과 및 성균관 시험에도 강경이 실시된 것이다.

는데, 이 시험은 영조대 후반부터 春到記와 秋到記시험으로 정례화되었다. 그런데 영조대 親臨殿講은 성균관 유생들의 居齋와 연계되어 있다. 이 시기 성균관의 거제는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圓點과 到記를 강화하였는데, 숙종 대부터 주도 봉당이 자주 바뀌면서 정치 활동에 소극적인 유생들도 거제를 기피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강을 자주 실시하였다. 원창에 외5명, 앞의 책, 187쪽, 박현순, 앞의 책, 134~143면 참조.

48) 유몽인 저, 신익철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554면.

49) 정시에 초시 도입은 『영조실록』권57, 영조 19년 1월 25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庭試는 정식 문과가 아니었다가 1542년 이후 정식 과거로 승격되었다. 원래는 單一試였는데 응시자가 많아지자 숙종대부터 初試를 실시하는 논의가 있게 되었고, 1743년(영조 19)에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박현순, 앞의 책, 135~138면 참조.

인용문 ②에서 이운영이 응강했던 시험은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된 정시 초시 합격자에게 시행하는 일경강이다. 일경강은 16명을 선발하여 다시 친시 일경강을 실시하였다. 이운영은 38세인 1759년 사마시에 급제하였기에 1751년(영조 25년)에 시행된 이 시험에서 친시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낙방한 자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술을 통해 당대 강경 시험장 분위기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운영의 강경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은 ①처럼 장막 안팎으로 응시자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했으며, 응시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서리들의 시선도 이운영의 괴로움을 가중케 하였다.

지금까지 성균관의 정상화 및 제술 위주 시험제도를 개선했던 영조대 과거제도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영조대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부정행위와 제도적 결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영조대 경학의 중시와 엄격한 과장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된 講經과 親臨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일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당대 관리강화에 따른 운영 정비의 일단도 확인할 수 있었다.

IV. 『瀨尾編・科場』의 의의와 한계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필기·야담과의 비교를 통해 『영미편·과장』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17~18세기의 필기·야담은 『松泉筆談』이나 『風巖輯話』처럼 전대 문헌을 轉載하는 경우보다는 『鶴山閑言』, 『天倪錄』, 『雜記古談』, 『樸素村話』 등과 같이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집필된 자작이 더 많이 확인된다. 『영미편』 또한 18세기에 창작된 필기·야담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공유한다. 게다가 『영미편』은 저술 동기에 있어 『천예록』과 『잡기고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잡기고담』의 저자인 任邁(1711~1779)는 이운영의 妻男이며, 『천예록』의 저자인 任墮(1640~1724)은 임매의 조부이

다. 즉 이운영은 18세기 대표적인 필기야담인 『천예록』과 『잡기고담』의 저자, 그리고 그의 가문과 연계되어 있다.⁵⁰⁾

그런데 科擧談에 제한하여 살펴보자면, 『천예록』이나 『잡기고담』보다 『박소촌화』가 주목된다. 『잡기고담』에서 과거담은 과거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문벌, 당색, 신분 제한 등으로 인해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인물들에 주목하였다. 즉 ‘인재등용에 대한 비판’이라는 보다 넓은 층위에서 과거담이 다뤄진다. 이에 반해 李東允(1727~1809)의 『박소촌화』에는 科擧談이 50화 정도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 무엇보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화 한 작품들에서 자기 주변 인물들 가운데 가족 및 노론계 師友가 등장한다는 점이 『영미편』과 유사하다. 특히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하여 전대 문헌을 수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재창작하거나 다른 필기야담집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이 확인된다.⁵¹⁾

하지만,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면 차이점이 확인하다. 무엇보다 『박소촌화』의 과거담은 하나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문집 전역에 산재되어 있기에 일화들이 단편적이다. 과거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보다는 다양한 사실을 나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실상을 알기에는 부족한데, 이는 『박소촌화』에만 국한된 양상이 아니며⁵²⁾ 필기·야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양상이다.

전술하다시피, 『영미편』의 주된 특징은 조선 후기 과거시험과 관련된 당대 현실을 곡진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운영의 과거에 관한 관심과 경험자로서의 경험 진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운영의 과거에 관한 관심은 『영미편』의 구성 양상에서 확인할 수

50) 임매와 이운영의 교유는 1736년 임매의 누이동생이 이운영에게 시집간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교유에 관한 연구는 정홍연(『『雜記古談』의 현실비판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51) 조선옥, 『『樸素村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4, 96~97면, 참조.

52) 이병직, 앞의 논문, 78면. 이 연구에서는 『박소촌화』와 문헌설회집(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설회집요』, 집문당, 1992; 김현룡 편저, 『한국문헌설회』,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있다. 무엇보다 『영미편』은 「과장」이란 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부터 과거담의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영미편』의 각 편에 해당하는 작품 수는 갈수록 적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저자의 관심에 따라 『영미편』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즉 「과장」은 『영미편』의 首篇이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운영의 과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과거시험에 대한 경험자로서 경험 진술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이야기인 간접적 경험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말한다. 이 때문에 과거시험에 대한 응시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관리자 및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시험의 과정, 배경 등, 당대 구체적인 실상을 극진하게 담아낼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노론계 입장에서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기에 사실 재현과정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나아가 「과장」에서 등장하는 배경과 인물은 대부분 경화세족이다. 물론 향촌 사회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이는 가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 및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영미편』의 특징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즉 「과장」에 등장하는 모든 일화가 사실성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대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상충된 입장과 현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실성에만 제한하여 『영미편・과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사실성은 역사적이며 사건을 진실되게 그려내는 것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것에 그럴듯한 현실감을 부여하는 장치와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화를 구현하고 있는 서사 기제를 병론해야 한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논문접수일: 20.08.31 / 심사완료일: 20.09.15 / 게재확정일: 20.09.29.

53) 신현웅, 앞의 논문, 326~327면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李運永, 『瀨尾編』(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소장본)

2. 논저

- 권기성, 「야담에 나타난 조선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 -법과 정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 김동욱 옮김, 『國譯 記聞叢話』, 아세아문화사, 2008.
-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 김학수, 「고시 공부는 비교도 안 될 처절한 과거 공부」,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 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중국사연구회 역, 『중국의 시험지옥 과거』, 청년사, 2001.
-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 신현웅, 「옥국재 『瀨尾編』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
- 원창애 외 5명,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130, 한국사연구회, 2005.
- 유몽인 저, 신익철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 이강욱,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 이강욱,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 이강욱 옮김, 『청구야담』, 문학동네, 2019.
- 이병직, 「『樸素村話』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64, 2013.
- 이병혁, 「과문의 형식고(II)-표·책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2, 동양한문학회, 1987.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주), 2004.
-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대동한문학』38, 대동한문학회, 2013.
- 전경목,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 정순후,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정홍연, 「『雜記古談』의 현실비판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조선옥, 「『樸素村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좌호, 『韓國科擧制度史研究』, 범우사, 1996.
- 차미희, 「계암일록을 통해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38, 대동한문학회, 2013.
- 黃渭周,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과제」, 『大東漢文學』22, 大東漢文學會, 2005.

3. 웹사이트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YoungMiPyen • GwaJang』 from the Viewpoint of Factuality / Kim, Ky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GwaJang」 in 『YoungMiPyen』, the work of Lee, Un-yeong (1722~1794). To this end, the discussion is limited to factuality. This paper examines characteristics of 『YoungMiPyen • GwaJang』 through comparison with systems and laws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classifies them into three types.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is divided into political misconducts and applicants' ways of responses to them, abuses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applicants, and an operational maintenance resulted from tightened management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is identified that the main characteristic of 『YoungMiPyen』 is that it sincerely contains specific realities such as processes and backgrounds of exams through various views not only from applicants' eyes but also from test administrators' eyes. This is because a writer's empirical statements as a previous experiencer of the exam and indirect statements from his relatives are reflected. Nevertheless, since the writer raises questions about the state exam as a member of the Noron line (老論系) its subjectivity can not be excluded in the process of reproductions of the reality. That is, 『YoungMiPyen • GwaJang』 has its significance since it shows the fact that various values and even extremely conflicting stances coexist at the same time.

Key words: Lee, Un-yeong, *YoungMiPyen*, Pilgi and Yadam, the State Examination, Factuality.